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07
----------	-------

발의연월일 : 2024. 2. 8.

발 의 자 : 전주혜 · 金炳旭 · 이명수
유경준 · 윤주경 · 홍문표
윤창현 · 박대출 · 배준영
지성호 · 서일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공동주택 입구 및 지하·지상주차장 입구를 자동차로 고정시켜 공동주택 주민들의 통행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함.

2018년 송도, 2019년 화순, 2021년 평택에서 일방 통행로 입구를 자동차로 가로막은 사건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입구 4곳을 9시간 동안 자동차로 막아 4,000세대의 입주민들의 차량이 출입하지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동주택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음.

수년 동안 특정 개인 및 집단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 입구 및 주차장 등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느장 행정으로 인해 현행법이 사문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공동주택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
자동차를 고정시켰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시간 이내에 조치하여
주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지키고자 함(안 제26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일정한 장소”를 “공동주택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 통행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정한 곳으로”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1시간 이내에 일정한 곳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강제 처리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 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u>일정한 장소</u> 에 고 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 용하는 행위 2. · 3. (생 략)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 를 <u>일정한 곳으로</u> 옮긴 후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 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 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 ----- ----- ----- ----- ----- ----- 1. ----- <u>공동주택 및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지 아니하 는 공공 통행로</u> ----- ----- ----- 2. · 3. (현행과 같음) ② ----- ----- ----- -- <u>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1 시간 이내에 일정한 곳으로</u> -- ----- ----- ----- ----- ----- -----

③ · ④ (생략)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